의안번호	2201495
의 뢰 인	박수영의원
회 답 일	2024.07.22.
추계번호	24A1816

국가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를 위한 특별법안

【비용추계서】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Ⅰ. 비용추계 결과

❑ (일부추계) 제정안에 따라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기본계획 수립, 반도체산업 현황조사 및 통계작성 등을 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5년 3억 6,200만원, 2029년 1억 6,200만원 등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 총 10억 1,000만원(연평균 2억 200만원) 이상으로 추계됨

○ 제정안의 다른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는 추계가 곤란하여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것임

○ 이에 제정안의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것임

[표 1]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5~2029년

(단위: 백만원)

	2025	2026	2027	2028	2029	합 계	연평균
국가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보호 기본계획 수립(안 제5조)	200	—	—	—	—	200	40
국가반도체산업 현황조사 및 통계작성(안 제7조·제8조)	162	162	162	162	162	810	162
합 계	362	162	162	162	162	1,010	202

주: 제정안의 다른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는 추계가 곤란하여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결과로, 제정안의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것임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Ⅱ.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5조(국가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보호 기본계획의 수립 등)	○ 정부는 국가반도체산업의 경쟁력을 체계적으로 강화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5년 단위로 국가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보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함(제1항) ○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제4항)	의무규정
2	안 제7조(국가반도체산업의 현황조사 및	○ 정부는 매년 국가반도체산업에 관한 경제적・산업적・국제적 현황을 조사하고 발전전망을 예측	의무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발전전망 예측)	하여 그 결과를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의 수립에 반영하여야 함(제1항) ○ 제1항에 따른 현황조사 및 발전전망 예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제2항)	
	안 제8조(국가반도체산업 관련 통계의 작성)	○ 정부는 국가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보호 기반 조성과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의 체계적 수립을 위하여 국가반도체산업에 관한 통계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함(제1항) ○ 제1항에 따른 통계를 작성할 때에는 「통계법」을 준용함(제2항) ○ 정부는 제1항에 따른 통계의 작성 및 관리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음.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업무 수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제3항) ○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통계의 작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제4항)	의무규정
3	안 제10조(국가반도체산업을 위한 국가 전력망 및 용수 공급망 설치·확충)	○ 정부는 국가 전력망 및 용수 공급망 설치·확충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반도체산업에 필요한 설비가 설치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제3항)	재량규정
4	안 제11조(반도체 클러스터의 지정 등)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가반도체산업의 혁신생태계를 조성하여 국내외 투자, 기술개발 및 설계·제조·공급 등이 촉진되도록 하기 위하여 반도체클러스터를 지정할 수 있음(제1항)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보호를 위하여 국가안보 및 국민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검토하여 국가반도체산업본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반도체클러스터 및 사업시행자에게 보조금을 직접 지원할 수 있음(제2항)[1] ○ 그 밖에 반도체클러스터 및 사업시행자의 지정, 재정 지원 및 특례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제4항)	재량규정
5	안 제13조(반도체 클러스터 육성시책)	○ 정부는 반도체클러스터의 혁신적 조성 및 운영을 위하여 반도체클러스터 육성에 관한 시책(이하 "육성시책"이라 한다)을 추진하여야 함(제1항) ○ 육성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제2항) - 1. 반도체클러스터 육성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의무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 2. 반도체클러스터 육성을 위한 산업기반시설 구축에 관한 사항 – 3. 반도체클러스터 입주 기업의 연구·개발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 4. 반도체클러스터의 체계적 개발 및 운영 재원 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 – 5. 그 밖에 반도체클러스터 육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관련 시·도지사는 육성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입지, 세제, 재정, 행정 등에 관한 지원책을 마련하여야 함(제4항)	
6	안 제14조(반도체 클러스터의 산업기반시설 설치)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반도체클러스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국가반도체산업 기반시설(천재지변 등 사고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한 이중화 시설을 포함한다)을 구축하여 제공하여야 함. 다만, 국가반도체산업 사업자가 해당 기반시설을 직접 구축 또는 제공하는 경우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함[2)] – 1. 반도체클러스터까지의 전력 공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 2. 반도체클러스터까지의 용수 공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 3. 반도체클러스터에서 배출되는 폐수 및 폐기물 처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 4. 반도체클러스터에 연결되는 도로 – 5. 그 밖에 반도체클러스터에 필요한 기반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의무규정
7	안 제16조(국가반도체산업 기술개발사업 등의 추진)	○ 정부는 국가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 – 1. 글로벌 기술격차 해소를 위한 연구개발사업 – 2. 국가반도체산업 기술개발을 위한 성능검증 및 실증센터 구축사업 – 3. 그 밖에 국가반도체산업의 생태계 강화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술개발사업	재량규정
8	안 제17조(국가반도체산업에 대한 세제지원에 관한 특례)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보호를 위하여 국가반도체산업 관련 기업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소득세 등의 조세를 감면할 수 있음	재량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9	안 제20조(국가반도체산업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	○ 정부는 국가반도체산업의 지속가능한 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반도체산업특별회계를 설치·운용하여야 함(제1항) ○ 국가반도체산업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과 같음(제3항) - 1. 국가반도체산업을 위한 국가 전력망 설치 및 확충 - 2. 반도체클러스터의 생산시설 구축 등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 지원 - 3. 반도체클러스터의 산업기반시설 설치 - 4. 반도체클러스터 육성시책 실행을 위한 사업 - 5. 국가반도체산업에 대한 세제지원 - 6. 국가반도체산업 인력의 양성 및 확보를 위한 사업 및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설치·운영 - 7. 국가반도체산업진흥센터의 설치 및 운영 지원 - 8. 국가반도체산업의 기술개발사업 - 9. 국가반도체산업의 국제협력 지원 - 10. 반도체 혁신성장 전략을 위한 조사·연구 사업 - 11. 국가반도체산업특별회계의 조성·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 12. 차입금 및 예수금의 원리금 상환 - 13. 운용·관리에 필요한 경비 - 14. 그 밖에 국가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의무규정
10	안 제21조(국가반도체산업 인력 양성)	○ 정부는 국가반도체산업의 우수인력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제2항) - 1. 국가반도체산업 인력의 전문역량 향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2. 국가반도체산업 인력의 연구개발 및 전략경영 관련 교육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3. 직업 훈련, 직업 능력의 개발 및 향상에 관한 사항 - 4. 신규 인력유입의 활성화 등 고용 유지 및 안정에 관한 사항 - 5. 퇴직근로자 등 반도체 숙련 인력이 소유한 기능·지식의 활용,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기술계승에 관한 사항 - 6. 반도체 공정을 위한 작업장 환경의 개선, 근로자의 처우개선 등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 7. 해외 고급 인력의 유치 지원에 관한 사항 - 8. 그 밖에 국가반도체산업 인력의 확보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의무규정
11	안 제22조(국가반도체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가반도체산업의 발전에	재량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기관 및 단체 등을 국가반도체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음(제1항) ○ 정부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관이 국가반도체산업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실시하는 데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음(제2항) ○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정 요건, 절차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제3항)	
12	안 제23조(해외 우수인력의 발굴·유치 및 특례)	○ 정부는 국가반도체산업 관련 해외 우수인력의 발굴·유치를 위하여 해외 대학·연구기관·기업의 전문인력에 관한 조사·분석을 할 수 있음(제1항)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가반도체산업 관련 해외 우수인력의 유치를 위한 국제네트워크 구축, 국제행사 참가 등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음(제3항) ○ 정부는 해외 우수인력의 발굴·유치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제5항) ○ 제1항에 따른 해외 우수인력의 발굴·유치 및 제5항에 따른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제6항)	재량규정
13	안 제24조(고용보조금 등의 지급)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반도체산업의 원활한 인력 확보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국가반도체산업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음	재량규정
14	안 제25조(국가반도체산업진흥센터의 설치)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가반도체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개발 및 지원사업 등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반도체산업진흥센터(이하 “진흥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함(제1항) ○ 진흥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함(제2항) - 1. 국가반도체산업 시장 및 기술의 조사·분석과 수집정보의 이용 - 2. 국가반도체산업 진흥을 위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 3. 국가반도체산업과 관련된 창업 및 경영 지원과 그에 관한 정보의 수집·관리 - 4. 기업의 반도체설계 등 경쟁력 강화 및 보호 지원 및 반도체 분야 세부 신산업 발굴 지원에 관한 사업 - 5. 국가반도체산업 관련 시설의 환경개선, 인력 확보 및 양성 지원 등에 관한 사업 - 6. 국가반도체산업 진흥에 관하여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의무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 7. 그 밖에 국가반도체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진흥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음(제3항) ○ 진흥센터의 설치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제4항)	
15	안 제26조(국제협력 등의 지원)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반도체산업의 글로벌 파트너십 형성을 통하여 국제적인 동향을 파악하고 국가반도체산업을 위한 통상협력, 해외시장 진출 지원, 전문인력 교류, 국제공동연구 수행 등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거나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	재량규정
16	안 제30조(포상 및 신고자 보호 등)	○ 정부는 국가반도체산업 기술 보호에 기여한 공이 큰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 및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음(제1항) ○ 제1항에 따른 포상·포상금 지급 등의 기준·방법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제2항)	재량규정

1) 「국가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를 위한 특별법안」 (의안번호: 2201495)
부칙 제2조(반도체클러스터의 산업기반시설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3항 및 제14조에 따른 지원은 반도체클러스터 지정 이전에 설치가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생산시설, 산업기반시설 등 인프라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2) 「국가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를 위한 특별법안」 (의안번호: 2201495)
부칙 제2조(반도체클러스터의 산업기반시설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3항 및 제14조에 따른 지원은 반도체클러스터 지정 이전에 설치가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생산시설, 산업기반시설 등 인프라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실시 사유)
1	안 제5조(국가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보호 기본계획의 수립 등)	○	—
2	안 제7조(국가반도체산업의 현황조사 및 발전전망 예측) 안 제8조(국가반도체산업 관련 통계의 작성)	○	—
3	안 제10조(국가반도체 산업을 위한 국가 전력망 및 용수 공급망 설치・확충)	×	○ 안 제10조제3항은 정부의 국가반도체산업에 필요한 설비가 설치되는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지원을 규정하고 있으나, 지원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지원의 대상 및 규모, 기준 등을 예측할 수 없어 현시점에서는 추계에 필요한 사항을 알 수 없음
4	안 제11조(반도체 클러스터의 지정 등)	×	○ 관련 현행 사업 존재([참고자료] 참조) ○ 다만, 제정안 시행에 따라 사업 규모가 확대될 수 있으나, 현시점에서는 사업의 확대 여부 및 확대 규모의 추계에 필요한 사항을 알 수 없음
5	안 제13조(반도체 클러스터 육성시책)	×	
6	안 제14조(반도체클러스터의 산업기반시설 설치)	×	
7	안 제16조(국가반도체산업 기술개발사업 등의 추진)	×	
8	안 제17조(국가반도체 산업에 대한 세제지원에 관한 특례)	×	○ 안 제17조는 국가반도체산업 관련 기업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국세 및 지방세 감면을 규정하고 있으나,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국세 및 지방세 감면의 대상 및 규모, 기준 등을 예측할 수 없어 현시점에서는 추계에 필요한 사항을 알 수 없음

9	안 제20조(국가반도체산업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	×	○ 안 제20조제1항은 반도체산업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을 규정하면서 안 제20조제3항은 반도체산업특별회계의 세출을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안 제20조제3항제14호는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추가되는 세출의 규모, 기준 등을 예측할 수 없어 현시점에서는 추계에 필요한 사항을 알 수 없음
10	안 제21조(국가반도체산업 인력 양성)	×	○ 관련 현행 사업 존재([참고자료] 참조) ○ 다만, 제정안 시행에 따라 사업 규모가 확대될 수 있으나, 현시점에서는 사업의 확대 여부 및 확대 규모의 추계에 필요한 사항을 알 수 없음
11	안 제22조(국가반도체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	
12	안 제23조(해외 우수인력의 발굴・유치 및 특례)	×	○ 안 제23조는 정부의 반도체산업 관련 해외 우수인력 발굴·유치를 위한 전문인력 조사·분석 및 이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제1항),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반도체산업 관련 해외 우수인력 유치를 위한 국제네트워크 구축 및 국제행사 참가 등에 관한 사업 수행(제3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안 제23조제6항은 해외 우수인력의 발굴·유치 및 안 제23조제5항에 따른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원의 대상 및 규모, 기준 등을 예측할 수 없어 현시점에서는 추계에 필요한 사항을 알 수 없음
13	안 제24조(고용보조금 등의 지급)	×	○ 안 제24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반도체산업의 원활한 인력확보를 위하여 반도체산업 사업자에 대한 고용보조금 지급을 규정하고 있으나, 고용보조금 지급 기준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현시점에서는 추계에 필요한 사항을 알 수 없음

14	안 제25조(국가반도체 산업진흥센터의 설치)	×	○ 안 제25조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국가반도체산업진흥센터(이하 “진흥센터”) 설치와 안 제25조제2항 각 호에 규정된 진흥센터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보조를 규정하고 있으나, 안 제20조제4항은 진흥센터의 설치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원의 대상 및 규모, 기준 등을 예측할 수 없어 현시점에서는 추계에 필요한 사항을 알 수 없음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법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제정안 부칙 제1조 등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으로 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가. 국가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보호 기본계획 수립(안 제5조)

❑ 비용추계 대상은 안 제5조에 따른 “국가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보호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비용”으로 하며, 기본계획 수립 비용은 연구용역비로 함

○ 산업통상자원부 제출 유사 연구용역 사례를 참조하여 국가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보호 기본계획 수립 비용을 추계함

○ 유사 연구용역 사례의 연구용역비 평균인 1억 9,500만원을 참조하고 5년 주기를 고려하여 법 시행 첫해인 2025년에 2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가정

[표 1] 국가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보호 기본계획 수립과 유사한 연구용역 사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사례	실시년도	예산(백만원)
제3차 무역구제진흥 기본계획 수립방안 연구(산업통상자원부)	2020	80
제4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수립 연구(환경부)	2020	460
제2차 산업융합발전 기본계획 추진전략(한국산업기술진흥원)	2017	90
제4차 소재부품발전 기본계획 수립 연구(한국산업기술진흥원)	2016	150
평 균		195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제출자료

❑ 제정안에 따라 국가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보호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할 경우 향후 5년간 총 2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

[표 2]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5~2029년

(단위: 백만원)

	2025	2026	2027	2028	2029	합 계	연평균
국가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보호 기본계획 수립(안 제5조)	200	-	-	-	-	200	40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나. 국가반도체산업 현황조사 및 통계작성 등(안 제7조 및 안 제8조)

❑ 비용추계 대상은 안 제7조 및 안 제8조에 따른 "국가반도체산업 현황조사 및 통계작성에 따른 비용"으로 하며, 현황조사 및 통계작성 비용은 실태조사용역비로 함

○ 산업통상자원부의 유사 실태조사용역 사례를 참조하여 국가반도체산업 현황조사 및 통계작성에 따른 비용을 추계함

○ 유사 연구용역 사례인 '항공제조산업 실태조사'[3)4)]의 2023년 결산 기준 연구용역비를 참조하여 추계기간 동안 매년 1억 6,2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가정

3) 세부사업 코드: 3551-390

4) 산업통상자원부 2023년 결산 사업설명자료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사)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에 대한 실태조사용역을 통해 국내 항공제조산업 기업체의 일반현황 및 생산·수주·고용·투자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연 1회 실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향후 항공제조산업 정부정책 및 장단기 전략 수립 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음

❑ 제정안에 따라 국가반도체산업 현황조사 및 통계작성 등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할 경우 향후 5년간 총 8억 1,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

[표 3] 국가반도체산업 현황조사 및 통계작성 등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5~2029년

(단위: 백만원)

	2025	2026	2027	2028	2029	합 계	연평균
국가반도체산업 현황조사 및 통계작성 (안 제7조·제8조)	162	162	162	162	162	810	162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Ⅳ. 부대의견

❑ 본 비용추계서의 추가재정소요액은 유사사례를 준용하여 추계한 결과로, 향후 실제 추가재정소요액은 달라질 수 있음

❑ 제정안의 다른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는 추계가 곤란하여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것으로, 제정안의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

Ⅴ.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추계세제총괄과	신헌태	권아영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신헌태	02-6788-4653	heontshin@assembly.go.kr

[참고자료]

반도체산업 관련 세부사업 현황(산업통상자원부 제출자료)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 (코드)	재원	사업 내용	2024예산
국가첨단전략산업특화단지 연대협력지원(R&D) (3171-419)	일반회계	○ 국가첨단전략산업특화단지를 구성하는 첨단전략산업 관련 전·후방산업 기술개발 및 실증 인프라 구축, 인력양성 지원	4,500
구미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지원(3171-433)	일반회계	○ 구미 국가첨단전략산업특화단지 내 구미 국가산단 1~3공단 간 연결성 강화 위한 교량 신설 지원	20,000
반도체인프라활용 현장인력양성(3161-319)	일반회계	○ 대학 내 반도체 인프리를 활용한 반도체 분야 중소·중견기업 재직자 및 취준생 교육을 통한 반도체 현장인력 양성	5,013
시스템반도체설계 실무인력양성(3161-323)	일반회계	○ 시스템반도체 설계교육센터 운영 및 산업계 수요를 반영한 교육과정 개발을 통한 반도체 설계 실무인력 양성	3,700
반도체아카데미구축 (3161-329)	일반회계	○ 반도체 산업계 수요의 맞춤형 현장 인력 양성을 위한 산업계 주도의 인력양성 센터인 '반도체 아카데미' 구축	4,260
민관공동투자반도체고급 인력양성(R&D) (3161-416)	일반회계	○ 대학·연구기관 석·박사 인력을 통해 기업 수요형 R&D 과제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초격차 핵심기술개발 및 석박사 고급 인력양성	11,974
PIM인공지능반도체 핵심기술개발(R&D) (3561-302)	일반회계	○ DRAM 제조 공정 기술 고도화, PIM용 차세대 상용메모리(MRAM, PRAM) 아키텍처 및 공정·소재·장비 상용화 기술개발을 통한 PIM용 메모리 기술 고도화	18,360
시장선도를위한 한국주도형 K-Sensor 기술개발(R&D)(3561-305)	일반회계	○ 주력산업의 데이터 수집 및 처리에 필요한 핵심 센서 기술개발과 센서 산업 생태계 구축 등 전주기 지원체계 마련	30,410
차세대지능형반도체기술개발 (설계,제조)(R&D) (3561-307)	일반회계	○ 산업체·학교·연구소의 4차 산업혁명시대에 부합하는 차세대 반도체 설계 핵심기술 R&D 지원을 통해 新시장 선점 및 제조기반기술 확보로 국산화율 제고	62,907

세부사업 (코드)	재원	사업 내용	2024예산
시스템반도체핵심IP개발 (R&D)(3561-308)	일반회계	○ 시스템반도체 핵심IP(반도체 설계) 확보를 통한 국내 파운드리 경쟁력 강화와 팹리스 기업의 가격경쟁력 제고로 파운드리-팹리스 선순환 생태계 구축	1,122
전략제품창출글로벌K-팹리스 육성기술개발(R&D) (3561-311)	일반회계	○ 시스템반도체 산업 경쟁력 확보 및 지속가능한 경쟁력 있는 중소·중견 팹리스 기업 육성	3,328
화합물소재기반 차세대전력반도체기술개발 (R&D)(3561-317)	일반회계	○ 전력시스템 수요에 대응 가능한 밸류체인형 상용화 기술·미래 선도형 기술·핵심 제조기술 개발을 산·학·연에 지원하여 친환경 에너지 전환 및 전력 효율 향상에 기여	7,393
신시장창출을위한수요연계 시스템반도체기술개발 (R&D)(3561-418)	일반회계	○ 수요 연계형 과제 추진체계 구축과 5代 신산업분야(자동차, 에너지, 도심항공, 헬스케어, AI스마트홈) 품목선정 · 지원을 통한 新산업 분야의 기술경쟁력 확보 및 차세대 반도체 산업 지원 강화	10,500
화합물전력반도체고도화 기술개발(R&D)(3561-422)	일반회계	○ 전력시스템 수요에 대응 가능한 밸류체인형 상용화 기술·미래 선도형 기술·핵심 제조기술 개발을 산·학·연에 지원하여 친환경 에너지 전환 및 전력 효율 향상에 기여	14,000
반도체디스플레이 온실가스감축공정기술개발 (R&D)(6431-534)	기후기금	○ 반도체·디스플레이 제조 공정에서 많이 사용되는 온실가스의 배출 최소화를 위한 저GWP 신규물질 개발 및 실증연구 지원	2,594
시스템반도체기업 성장환경조성(3171-304)	일반회계	○ 팹리스기업 창업초기 인프라지원, 설계환경지원, 시제품(MPW) 제작지원을 통한 설계 인프라 제공	9,625
시스템반도체 IPBank 플랫폼 구축(3171-315)	일반회계	○ 단기수요대응, 핵심IP확보, IP선순환 생태계시스템구축을 통한 반도체 국가전략자산 확보 및 플랫폼화	5,482
시스템반도체 수요연계 온라인플랫폼지원사업 (3171-372)	일반회계	○ 수요기업의 니즈와 공급기업의 기술을 온라인 플랫폼(COMPASS)에 등재하여 정보를 교류하고, 매칭된 기업의 시제품 제작비용 지원	8,050

세부사업 (코드)	재원	사업 내용	2024예산
반도체소모품실증센터구축 (3171-424)	일반회계	○ 해외 선도기업과의 기술격차 완화 및 국내 공급망 강화를 위해 반도체 소모품 실증센터를 구축하여 기업의 연구개발·양산단계에서의 실증 지원체계 구축	2,000
시스템반도체검증지원센터 구축 (3171-432)	일반회계	○ 시스템반도체 상용화 지원 및 생태계 강화를 위해 팹리스, IP 기업의 반도체 설계와 성능 검증을 위한 기술 및 인력 지원	3,000
지능형반도체개발실증지원 (3171-436)	일반회계	○ 지능형 반도체 설계·생산 경쟁력 및 협력 생태계 강화를 위해 설계툴 및 시제품 제작·실증 지원, 인력양성 등 팹리스 전주기 성장 거점 지원	3,390
반도체소재·부품시험평가센터 구축 (3171-435)	일반회계	○ 반도체 소재·부품 시험/평가/분석 인프라 및 센터 구축을 통해 기술개발 및 사업화 지원	5,000
미래차전장부품시스템반도체 신뢰성검증센터구축 (3171-434)	일반회계	○ 미래자동차 전환에 따른 시스템반도체 및 신규부품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차량용 반도체와 전장부품을 통합 지원할 One-Stop 검증센터 구축	4,300

주: 산업통상자원부 반도체과 소관 세부사업 기준